

제 724 호  
1979. 7.2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삼천  
편집 : 문화공보관 김인동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	
제 1346 호 :	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..... 3
제 1347 호 :	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..... 5
◎ 훈 령	
제 506 호 :	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공무원의실적관리및평가 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..... 6
제 507 호 :	서울특별시세무공무원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..... 7
◎ 교 시	
제 307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원)지적승인..... 7
제 308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원)지적승인..... 8
제 309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원)지적승인..... 8
제 323 호 :	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, 도로)지적승인... 9
제 324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및하수도시설) 실시계획인가..... 10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1929

제 325 호 :	도시계획시설 ( 아동공원 , 종합의료시설 , 학교 ) 결정 및 지적승인 .....	15
제 326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취소 .....	15
제 327 호 :	도시계획시설 ( 여객자동차정류장 ) 지적승인 .....	16
제 328 호 :	도시계획시설미관지구결정및변경 .....	16
제 329 호 :	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결정및 지적승인 .....	17
제 330 호 :	도시계획사업 ( 전기공급설비 ) 시행허가 .....	17
제 331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 .....	18
제 332 호 :	울지로 2 가제 10 지구 1 공구채개발사업시행인가 .....	19
제 333 호 :	도시계획시설 ( 고가도로 ) 변경 .....	22

◎ 공 고

제 244 호 :	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 .....	22
제 245 호 :	주택개량을위한채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.....	23
제 247 호 :	제 5 회서울발전상사진작품모집및전시 .....	23
제 248 호 :	주택개량을위한채개발사업건축계획및 관리처분계획공람 공고 .....	24
제 249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하수도 ) 실시 계획공람공고 .....	25
제 250 호 :	KS 표시성지처분해제공고 .....	26
제 251 호 :	도시계획사업완료공고 .....	27
제 60 호 ( 친호출장소공고 )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.....	27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로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79년 7월 24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346 호

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32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시행지구 및 면적)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, 신도림동, 도림동, 신길동 각 일부지역 약 460,000 평으로 한다.

제 4 조 (종전토지) 환지교부 또는 환지에정지 지정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필의 면적은 법 제 34

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공고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도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.

- 1. 공고일 이후에 분할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날의 토지대장의 면적
- 2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

제 5 조 (평정가격) ①정리전후의 토지 각필의 가격평정은 감정기관(한국감정원, 공인토지평가사 및 감정사)의 감정과 토지의 위치, 형상, 고저, 간습, 면적, 지가, 교통, 환경등을 참작하여 매매사례 비교법과 노선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정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다.

제 6 조 (환지계획의 기준) ①환지는 법 제 48 조 및 제 9 조에 규정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위치 근처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법제 32 조에 의한 인가일에 현존

하는 유택가건물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 및 배지에 대하여는 전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되는 토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가 위치 및 면적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( 특별지의 환지지정 ) ①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명정가격이 근소하여 환지가 택지로서는 미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.

②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중환지 또는 감환지를 할 수 있다.

③국유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, 계속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8 조 ( 청산기준 )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교부된 환지면적과의 차에 명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.

제 9 조 ( 환지처분 ) 환지처분은 공사 완료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나, 일부 완료지역 또는 공사의 형편상

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 공공용지의 부담 ) 공공용지로서 토지 각필에 부담하여야할 면적은 종전 토지면적 정리 전후의 명정가격 및 계획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일부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 11 조 ( 사업기간 ) 이 사업은 인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12 조 ( 권리어동 ) 이 조해의 시행일 이후에 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권리자는 지체없이 시장 또는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 등기완료후의 통지 )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지 설명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 대리인 제출 )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의 신청 기타 사업시행에

관한 의견제출등 필요한 램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 신고 ) ①토지소유자, 대리인 및 관계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②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, 성명을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그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관지 처분전에 지방세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)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7 조 ( 비용부담 ) ①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며, 부양이 있을 때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별도조례로 정한다.

제 18 조 ( 사업비목적의 사용금지 ) 시행자는 본사업비의 일부 또는

전부에 대하여 타목적으로 전용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지구내에 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 증명 및 분할 ) ①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관한 계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②중전토지와 환지의 변경 및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.

제 20 조 ( 시행규칙 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로토지 구획정리 부담금 부과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정상천 인  
1979년 7월 24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347호

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  
부담금징수조례

제 1 조 ( 목적 ) 이 조례는 토지구획

정리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보지구획정리사업(이하 "구획정리"라 한다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 또는 그 인접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부과총액)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구획정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법 시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1. 보조금
2. 채비지(보류지) 매각대금
3. 잡수입

제 3 조 (부과기준) 부담금은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토지 기타 시설물의 구획정리전과 정리후의 평가액을 비교한 차액에 의하여 부과한다.

제 4 조 (부담금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구획정리를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하는 경우
2.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5 조 (납부기간등) 부담금의 부과

시기, 납부기간, 납부방법 및 장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6 조 (체납처분)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제 7 조 (정산)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정산액에 과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다.

제 8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세입금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
서울특별시시장 정상천 인  
1979년 7월 24일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506 호

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기관과공무원의 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 5 조 중 제 4 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
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  
다.

**고 시**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07 호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 
1979년 7월 24일

도시계획시설(공원)지적승인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507 호

서울특별시세무공무원인사관리  
규정중개정규정

1. 당시 건설부 고시 제 138 호('77. 7. 9)로 제정비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('77. 3. 15)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한다.

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
중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  
제 7 조 및 제 8 조를 삭제한다.

2. 관제도서는 관할구정 도시계획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  
다.

1979. 7. .  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지적승인조서

건 호	공원종류	공 원 명	위 치	면적(㎡)
근11-06	근린공원	방배공원	관악구 방배동	227,400
근11-09	"	백제묘지공원	관악구 사당동	15,950
근12-21	"	서초공원	관악구 방배, 서초동	692,100
근06-01	"	쌍문공원	도봉구 쌍문, 양학동	377,500
근10-16	"	신성계 2 공원	강서구 신성동	88,000
근07-03	"	불광공원	서대문구 불광동	114,500
근06-03	"	월곡계 2 공원	도봉구 길계동	260,500
근12-04	"	상지공원	강남구 장지동, 거여동	593,750
근10-05	"	염창공원	강서구 염창동	98,000
근10-05	자연공원	대오산공원	강남구 연곡, 내곡, 알현동	5,251,000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⑤ 서울특별시고시제 302 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38 호('77.7.9)로 개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 호

( '77.3.16 )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주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서 보이게 한다.

1979.7.7.  
서울특별시장

다. 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승인조사

번 호	공원종류	공 원 명	일 차	면적(㎡)
00-07	근린공원	응두공원	경기, 고양, 신탄, 응두리	114,256
00-03	"	신장현공원	경기, 고양, 신탄, 지성리	17,522
00-01	"	하촌공원	경기, 고양, 신탄, 소금리	131,154
10-08	"	과곡제 2 공원	강서구, 과곡동, 복동	52,700
04-04	"	능동공원	성동구 능동	492,102
12-16	"	역삼공원	강남구, 역삼, 삼성동	52,884
12-10	"	석촌공원	강남구 석촌동	300,751

별첨 도면 표기와 같음(도면생략)

⑥ 서울특별시고시제 303 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38 호('77.7.9)로 개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을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

( '77.3.16 )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주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서 보이게 한다.

1979.7.7.  
서울특별시장



○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조서							
번 호	공원종류	공 원 명	위 치	면 적			
근 07-01	근 린 공 원	진 관공 원	서대문구진관내동	999,792			
근 07-02	"	갈 현공 원	서대문구갈현동	157,124			
7	자 연 공 원	수 락 산공 원	도봉구 상계동	6,692,700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23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 도로)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1(79.6.25)호로 결정 및 변경된 도봉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, 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겠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</p>			<p>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 한 위 임 사 항 에 따 라 이 를 지 적 승 인 하 고 고 시 한 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 다.</p> <p>1979.7.18.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		
○ 결정조서							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			
신 설	여객자동차정류장	쌍문동 512 번지 일대	2,160	도로제외			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생략)							
○ 도로 지적승인조서							
구 분	등 급	류 별	폭 원	연 가	기 점	종 점	비 고
기 점	소 로	3	6m	40m	쌍문동 512	쌍문동 512	전와은수부지내
변 경	"	"	"	"	"	"	도로위치변경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24호

종점 : 영등포구 대림동  
1016번지앞

도시계획사업 ( 도로및 하수도  
시설 ) 실시계획인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구로공단  
- 경수국도간 도로신설공사

3. 사업의 규모 : 도로신설 B = 20m  
L = 1300m 하수도시설 (D = 450-  
900mm) L = 1450m

1. 건설부 고시 제 2493 호 (1966.6.  
21)에 의한 시설결정 및 건설부  
(서울)고시 제 25 호 (1972.11.10)  
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( 도로 및  
하수도 시설 )에 대하여 다음과 같  
이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  
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시  
행령 제 27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함.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 영등포  
구청장 )
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  
획 인가일 '79.12.31.
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 
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  
계인에게 공람에 공하고 있음.

6. 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 제 324호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 
조서,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 
의 권리의 명세 : 별첨서류참조

8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 
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 
주소 성명 : 별첨서류 참조

1979.7.20.

서울특별시장

인 가 증

도시계획사업 ( 도로및 하수도  
시설 ) 실시계획인가증

위와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  
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시행령 제  
27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 도로 및  
하수도 시설 )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 
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.

1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구로동  
대림동 지내

서점 : 영등포구 구로동 185번지앞

1979.7.20.

서울특별시장

시 정 단 가		총 보 상 액	소 유 사		감 성 선 호
평 당	㎡ 당		주 소	성 명	
133,000	40,232	6,396,888	회기동 102-100	최 대 봉	1
133,000	40,232	17,782,544	등촌동 400-21	차 기 순	2
136,500	41,291	3,427,153	"	"	3
140,000	42,350	296,450	회기동 102-100	최 대 봉	4
140,000	42,350	8,808,800	"	"	5
140,000	42,350	22,826,650	"	"	6
143,500	43,408	26,956,368	신림동 1225-4	신동경외2	7
143,500	43,408	76,832,160	이촌동 300-11	최 원 숙	8
150,500	45,526	36,284,222	회기동 102-100	최 대 봉	9
150,500	45,526	35,510,280	"	"	10
150,500	45,526	136,578	신도림동 967-3	김 제 화	11
150,500	45,526	15,934,100	"	"	12
150,500	45,526	7,056,530	"	"	13
150,500	45,526	28,544,802	남창동 30	전명수외4	14
155,750	47,114	45,182,326	신설동 94-5	최 삼 석	15
155,750	47,114	28,032,830	신도림동 836-15	이 선 기	16
161,000	48,702	63,458,706	신길동 303-2	김학걸외1	18
161,000	48,702	633,126	남가좌동 124-357	중 영 자	18-1
161,000	48,102	340,914	신도림동 1015-48	이 역 훈	18-2
161,000	48,702	292,212	" 1032-12	신 기 순	18-3

27-12 제 724 호 시

보 1979.7.24

번호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감정단가		
	동명	동번			감정원	제일감정	감정평균
21	신도림동	1032-36	대	9	230,000	230,000	230,000
22	"	1032-35	"	11	230,000	230,000	230,000
23	"	1032-34	"	12	230,000	230,000	230,000
24	"	1032-33	"	13	230,000	230,000	230,000
25	"	1032-32	"	14	230,000	230,000	230,000
26	"	1032- 2	"	12	230,000	230,000	230,000
27	"	1032-21	도로	767	230,000	230,000	230,000
28	"	1032-30	대	43	230,000	230,000	230,000
29	"	862- 2	답	2,331	230,000	230,000	230,000
30	"	862- 8	대	18	230,000	230,000	230,000
31	"	870- 2	답	100	230,000	230,000	230,000
32	"	870- 3	"	13	230,000	230,000	230,000
33	"	1019-30	"	10	230,000	230,000	230,000
34	"	1019-31	"	13	230,000	230,000	230,000
35	"	1019-14	"	122	230,000	230,000	230,000
36	"	1016-15	도로	648	230,000	230,000	230,000
37	"	1018-16	답	175	240,000	240,000	240,000
38	"	988-41	"	208	250,000	250,000	250,000
39	"	988- 2	대	243	250,000	250,000	250,000

시 점 단 가		총 보 상 액	소 유 자		감 정 번 호
평 당	㎡ 당		주 소	성 명	
161,000	48,702	438,318	청파동 1가 89-38	최 북 권	18-4
161,000	48,702	535,722	신도림동 893-74	이 명 일	18-5
161,000	48,702	594,424	동교동 185-23	각 영 권	18-6
161,000	48,702	633,126	사직동 311-63	구 진 식	18-7
161,000	48,702	776,232	경산군 하양면 한사동 580	김 광 호	18-8
161,000	48,702	584,424	가회동 205	한 권 교	18-9
161,000	48,702	37,354,434	대방동 375-1	학교법인 원석학원	19
161,000	48,702	2,094,186	담십리동 58-26	김규영외 1	19-1
161,000	48,702	113,524,362	신대방동 505	박 길 윤	20
161,000	48,702	876,636	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1272	최 상 준	20-1
161,000	48,702	4,870,200	신도림동 931	김 창 완	21
161,000	48,702	633,126	" "	"	22
161,000	48,702	487,020	전주시 노형동 2334	양 세 영	23
161,000	48,702	633,126	성파동 2가 55-3	임 동 근	24
161,000	48,702	5,941,644	신도림동 1016	한 재 수	25
161,000	48,702	26,732,398	" 929-2	강 명 태	26
168,000	50,820	49,549,500	" 839	이 연 기	27
175,000	52,937	11,010,896	신림동 82	김 장 수	30
175,000	52,937	13,128,376	신도림동 986-2	윤병을외 2	31

27-14 제 724 호 시

보 1979.7.24

번호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감정단가		
	동명	지번			감정원	제일감정	감정평균
1	신도림동	1086-2	도로	159	180,000	200,000	190,000
2	"	1087-36	"	442	180,000	200,000	190,000
3	"	1087-3	"	83	190,000	200,000	195,000
4	"	1088-20	"	7	190,000	210,000	200,000
5	"	1088-4	"	208	190,000	210,000	200,000
6	"	1083-6	"	539	190,000	210,000	200,000
7	"	1082-5	잡종지	621	200,000	210,000	205,000
8	"	1082-24	"	1,770	200,000	210,000	205,000
9	"	1081-4	도로	797	210,000	220,000	215,000
10	"	1080-2	"	780	210,000	220,000	215,000
11	"	1078-3	답	3	210,000	220,000	215,000
12	"	1079-3	"	350	210,000	220,000	215,000
13	"	1078-2	"	155	210,000	220,000	215,000
14	"	1077-7	"	627	210,000	220,000	215,000
15	"	1027-27	"	959	220,000	225,000	222,500
16	"	1028-1	"	595	220,000	225,000	222,500
17	"	1032-38	도로	1,303	230,000	230,000	230,000
18	"	1032-31	대	13	230,000	230,000	230,000
19	"	1032-40	"	7	230,000	230,000	230,000
20	"	1032-37	"	6	230,000	230,000	230,000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25 호

도시계획시설(아동공원, 종합의  
료시설, 학교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반월공단 이전 적지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아동공원, 종합의료시설, 학교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

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('77. 3.16)의 권한 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7.20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아동공원, 종합의료시설, 학교) 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(평)	비 고
신설	아 동 공 원	영등포구당산동 6 가 280-1	322	
"	"	" 신길동 107-2	483	
"	"	" 가리봉동 29-4	534	
"	종합의료시설	도봉구번동 470-1	2,050	
"	학 교	동대문구중화동 119	2,644	국민학교
"	"	성동구성수 2 동 57-8	2,352	"
"	"	영등포구양평동 3 가 91	3,170	중 학교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26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 
시행허가취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0 호(77. 8.27) 및 동 고시 제 420 호(77.12.2)로 시행허가 및 변경허가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취소 하였

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제 25 조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본 허가취소에 따른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7.23

서울특별시장

가)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97-1 외 14필  
 나)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 (학교: 성신여자중, 고등학교)  
 다) 시행규모 및 면적: 84,645㎡ (25,605평)  
 라)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-1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나중숙  
 마) 위치 및 평면도: 별첨 (생략)

6.25)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(77.3.16)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7 호

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1 호(79.

1979.7.23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여객자동차정류장	용산구 보광동 35 일대	677㎡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8 호

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

제 41 호( '77.3.16 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979.7.23

서울특별시 장

○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조서

구분	종별	연장	면적 ( )	위치	비고
신설	3종	1,020	40,800	적선동 107 - 청운동 108	양측 20
기정	2"	2,600	62,400	동작동 - 남성동	
변경	2"	2,600	104,000	"	양측 20
기정	4"	600	14,400	사당동 - 원각사	
변경	4"	600	18,000	"	양측 15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9 호  
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  
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(79. 1.18)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 
 2. 이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은평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1979.7.23  
 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목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소로	4		4	30	갈현동 275-76	갈현동 275-149	
"	"	4		4	30	" 275-129	" 275-129	
"	"	4		4	20	" 275-56	" 275-56	
"	"	2		8	260	" 317	" 355	
폐지	"	2		8	150	" 136-5	" 139-1	
"	"	2		8	32	" 139-1	" 139-2	
신설	"	3		6	210	신사동 271-5	신사동 262-8	

별첨 도면과 같음 (도면 생략)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0 호  
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 설비) 시행허가  
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61 호 (78. 12.15) 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 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서단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1979.7.23  
 서울특별시장  
 1) 사업시행지: 관악구 노량진동 151-1, 4, 8, 7 153-13

2)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 
(전기공급설비) : 노량진변전소

3)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중구남산동 3가 11-5  
한국전력관리본부 본부장 김차경

4)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
가.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 
나. 준공년월일 : 1980.7.31

5) 위치도및계획평면도 : 별첨 (별첨생략)

6) 공사설계도서 : 별첨 (별첨생략)

7) 사업시행규모 : 4,815 ㎡  
(1,456.6 평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31 호  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2 호 ( 79.5.24 ) 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7 호 ( 79.6.8 )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1979.7.24  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문정동 산 7-10
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( 예립여자고등기술학교 이전 )

3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59의 7  
재단법인 예립학원 이사장

4. 사업의규모및면적 : A = 3,448 평방미터

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
가. 착수년월일 : 79. 7. 1  
나. 준공예정일 : 79.12.31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7. 위치및계획평면도 : 별첨 ( 생략 )

8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 생략 )

○ 사용할 토지내역 및 소유권 명세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평방미터)	소유자	
				주소	성명
강남구문정동	7-10	임야	3,448 ㎡	재단법인 예립학원	
계			3,448 ㎡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32 호

을지로 2가 제 10 지구 1 공구  
재개발사업시행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 77, 6, 29 )  
및 건설부고시 제 382 호 ( 78, 11, 30 )  
에 의거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 
계획결정된 을지로 2가 제 10 지구 1  
공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 
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  
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시행인가  
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1항의  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 
도시경비과 및 을지로 2가 제 10지구  
1공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  
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  
에 공한다. ( 관계도서생략 )

1979. 7. 24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다 음

- 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을지로 2가  
제 10 지구 1 공구 도시재개발 사업
- 나. 시행구역 및 면적
  - 시행구역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
2가 9-1 외 25필지
  - 시행면적 : 4,267.1 ㎡  
건축면적 : 1,944 ㎡ ( 전체율  
48.6 % )  
대 지 : 3,999.4 ㎡  
연 면 적 : 35,465 ㎡ ( 용적률  
663 % )
- 다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중구 을지로 2  
가 9-1 내외용업주식회사  
층수 : 지상 13 , 지하 4  
용도 : 사무실
- 라. 시행기간 : 시행인가일 - 1982.12.31까지
- 마. 시행인가년월일 : 1979.7.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축물의  
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
( 별첨 )

사용또는수용할토지건축물의명세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
가) 토지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 유 권 자			소유권이외권리	
					주 소 성 명	종 류	주 소	성 명	
1	중구 을지 로 2가	3-1	대지	735.2 <sup>㎡</sup>	서울시중구 을지 로 2가 9-1	내외용업 (주)	근저당권	서울중구남대 문로 2가 10	서울신타운 한일은행
2	"	3-2	"	13.2	"	"	지상권	"	"
3	"	4-2	"	30.1	"	"	근저당권	서울중구소공 동 76	한일은행 신타운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권자			소유권이외권리	
					주소	성명	종류	주소	성명
4	중구을지 로 2가	7	대지	168.6	서울시중구을지 로 2가 9-1	내외공업 (주)	근저당권	서울중구소공 동 76	한일은행, 신택은행
5	"	8	"	264.5	"	"	"	"	"
6	"	9-1	"	1,482.6	"	"	"	"	"
7	"	9-2	"	9.9	"	"	"	"	"
8	"	9-3	대지	2.9	서울시 중구수 하동 50	동국제강	"	서울중로구 관철동 10	한국의환은행
9	"	9-4	"	11.5	"	"	"	"	"
10	수하동	50	"	4.3	"	"	"	"	"
11	"	64	대지	112.4	서울중구남 대문로 1가 34	개성상회	해당없음		
12	"	65-3	"	150.4	인천시중구송학 동 3가 2	황 피주	"		
13	"	65-4	"	12.5	"	"	"		
14	을지로 2가	5-1	"	569.9	서울중구을지로 2가 5	동원산업	"		
15	"	6	"	221.5	"	"	"		
16	남대문 1가	26-1	"	52.2	"	"	"		
17	"	25-1	"	175.2	서울남대문로 1 가 25-1	김명희	"		
18	"	27-1	"	65.8	서울중로구내수 동 183 서울중구저동 2가 61-10	김영배 박수재	근저당권	서울중구남대 문로 2가 130	한일은행
19	"	28-1	"	9.2	서울서대문구북 아현동 1-616 순창면 남계리 77 외 6인	정만표 정병택	해당없음		
20	"	25-2	도로	16.5	"	국유	"		
21	을지로 2가	1-3	"	39.2	"	서울특별시	"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권자			소유권이외권리	
					주소	성명	종류	주소	성명
22	을지로2가	무자번	도로	5.3 <sup>㎡</sup>		서울특별시	해당없음		
23	수하동	63-3	"	3.7		"	"		
24	"	64-1	"	81.4		"	"		
25	남대문로1가	48-4	"	7.2		"	"		
26	"	75-1	"	41.9					

## 나) 전 물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용도	구조	지적	소유자		
						주소	성명	종류
1	중구수하동	64	창고	세멘연와조 합석층 3층	120평	서울중구남대문 1가 34	개성상회	해당없음
2	"	65-3	영업소	철근콘크리트 평옥개 1-6층 (자하실포함)	317.27	인천시중구송학 동 3가 2	황희주	"
3	중구남대 문로 1가	25-1	점포및 사무실	철근조와층 1층 2층	80.37	서울중구남대문 로 1가 25-1	김명희	"
4	"	27-1	점포	목조와층	18	서울중구남대문 동 183 서울중구저동 2가 61-10	김영배 박수재	"
5	"	28-1	"	"	5.60	서울서대문구북 아현동 1-616 순창면남계리 77	정만표 정영태외 7인	"
6	"	26-1	사무소	연와조 육오조층 3층	39	서울중구을지 로 2가 5-1	동원산업	"
	합지로 2가	6	주택	복조와층	77.01		"	"
	"	5	"	"	80.92		"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33 호

도시계획시설(고가도로)변경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고가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전실부고사 제 41 호('77.3.16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

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판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7.18.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기정	고가도로	성북구삼선동 2가 356-363 (성신학원내육교)	B= 3.2 L= 14	
변경	.	.	.	폐지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4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 
환지예정지지정공고

- 1.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2 호(79.6.28)로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공고한바, 동 기간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으므로 공람공고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의거 환지계획을 일부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 56 조의

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하였기 공고한다.

- 2. 환지계획 변경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- 3.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송부한다.

1979.7. .

서울특별시장

( 환지계획 변경내역 )

사 업 명 :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 
 변경위치 : 강서구내발산동 440 번지의  
 3 필지  
 변경면적 : 834.5 평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5 호

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 
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 470 호 (73.12.1)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신당제 1 구역 등 5 개구역의 사업실시계획을 인가코자 도시재개발법제 31조 규

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.

1979.7.13

서울특별시장

공 램 내 용

가. 시행지

사업명칭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당 1 구역	중구신당동 21, 산 6 번지일대	149,690	실시계획인가
신길제 3 구역	영등포구신길동산 137 "	123,780	"
신정제 4 "	강서구신정동 136-1 "	37,740	"
미아제 5 "	도봉구미아동 1261, 산 100-1 "	399,046	"
철 재 "	도봉구철재동 23 일대	72,734	"

- 나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 
 다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  
 인가일로부터 81.12.31 까지  
 라. 설계도서 및 자원조서 : 생략  
 마.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및 건물조서 : 생략  
 바. 관계인의주소, 성명 :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7 호

제 5 회 서울발전상 사진작품  
모집및 전시

서울의 발전상을 담은 사진작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 전시한다.

1979.7.21

서울특별시장

<p>1. 작품내용</p> <p>가. 서울의건설 및 도시정비 미화</p> <p>나. 도시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</p> <p>다. 서민생활안정 및 소비절약</p> <p>라. 시민복지 및 총화시정</p> <p>마. 기타 시민생활환경 및 시정 전반에 걸친 발전상</p> <p>2. 작품의종류 및 규격</p> <p>가. 작품종류 : 칼라 및 흑백사진</p>		<p>나. 작품규격 : 인화작품 11×14 이상 ( 엽음사진도 같음 )</p> <p>* 필립규격 제한없으며, 입상작품에 한하여 원판 제출</p> <p>3. 접수기간 : 79.10.15-10.24(10일간)</p> <p>4. 접수처 : 시정홍보관(시청앞 지하철역구내)</p> <p>5. 입상작품 발표 : 79.10.27(토) ( 개별봉지및 각 일간신문, 방송에 보도 )</p>	
<p>6. 시 상</p>			
구분	시 상	내 용	작 품 수
금 상	상장 및 상금	50 만원	1 점
은 상	상장 및 상금	30 만원	2 점
동 상	상장 및 상금	20 만원	5 점
입 선	상장 및 상금	1 만원	50 점
<p>* 작품용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</p>			
<p>7. 입상작품전시 : 79.11.15-12.31 ( 시정홍보관 )</p> <p>8. 판 권 : 입상작품의 판권은 당시에 귀속됨</p> <p>9. 낙선작품 반환 : 입상작발표후 10일 이내 ( 단, 동 기간내 찾아가지않은 작품은 위의 처분함 )</p> <p>10. 기 타</p> <p>가. 촬영대회 개최</p> <p>o 대회일시 : 79.9.23(일) 10:00 - 17:00</p> <p>o 대회장소 : 시 주요 건설사업장 ( 코스, 추후발표 )</p>		<p>o 참가인원 : 200명(선착순 접수)</p> <p>o 참가신청 : 79.8.20부터 시 문화공보관실에서 신청서배부 및 접수</p> <p>나. 문 의 처</p> <p>서울특별시 문화공보관실 보도계 ( 75-7614 ) ( 주소 : 중구대평로 1 가 31 )</p> 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8 호</p> <p>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 및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</p> <p>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인 아현1구역 및 신당1구역(일부)에</p>	



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및 42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조 및 건축법제 33조의 2 규정에 따라 동구역 관리처분계획에 부속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공람에 등한다.

2.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다.

3. 공고내역

지구명	위 치	계획수립면적	계획수립내용
아현1구역	아현동 21,85,392번지인접지 일대	43,455 평	1. 지면별조서 및 도면생략 (개별통지)
신당1	신당동 37번지 - 42번지	7,227 평	2. 건축계획서 (주택개발과 비치)

1979.7.20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9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 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시 고시 제 578 호 ( 1978.11.6 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공사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동법 3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이 공람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함.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, 미수

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

3. 관련도서는 은평출장소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함.

1979. . .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- 가. 사업장위치 : 서대문구진관내동 14번지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진관내동 주변 하수도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: 철근콘크리트 암거공 (3.5×1.5) L=36 m  
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은평출장소장)  
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 
 바. 사용토지는 수용할 토지 : 별첨토지조서 참조  
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: 토지조서 참조

토 지 조 서

순 번	토지소재지		지 목	저 축 평 수	소 유 자		비 고
	동 명	지 번			주 소	성 명	
1	진관내동	75-1	하천	76		서울시장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0 호

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 
 KS ( 한국공업규격 ) 표시 정지처분된  
 아래업체에 대하여 등록처분을 해제

하고 표시품생산을 계속 승인하였기  
 등록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준  
 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79.7.19

서울특별시장

1	허가번호	847	775
2	허가일자	73.10.19	73.2.28
3	제조업체명	중앙기계공업(주)	유성기업(주)
4	대표자	박삼봉	유홍우
5	소재지	영등포구구로동 616	영등포구오류동 163-1
6	규격번호	KSB 9302	KSB 9302
7	품명	자동차용시린머라이너	자동차용시린머라이너
8	규격	습식	습식
9	처분일자	79.3.14	79.3.14
10	해제일자	79.7.19	79.7.19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1 호

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87 호 ( '77. 3.29 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동법 제 46 조 3 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1 호 ( '77.3.16 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다 음

- 가. 사업집행지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신촌동산9-1외3 필지
- 나. 사업명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
- 다. 허가번호 및 일시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87 호 ( '77.3.29 )
- 라. 시행면적 : 19,337 ( 5859.7 평 )
- 마. 사업시행자 :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
- 바. 준공년월일 : 1979.7.20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1과 및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7.21

서울특별시장 공인경

◎ 천호출장소공고 제 60 호

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2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호제 2 동장 공인을 사용승인하였기 관인규정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79.7.21

서울특별시 천호출장소장

- 1. 공인개각 사용 게시일자 1979.8.1 부터
- 2. 개각된 공인명
  - 천호 제 2 동장의 직인
- 3. 공인개각 인영

인 영



천호제 2 동장 직인